#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7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한기호·김승수·김성원

유용원 · 강선영 · 김용태

김선교 · 김기현 · 서천호

김정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 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무공포장수상자: 무공포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해당한다.
- 8의2. 보국포장수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포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해당하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제14호"를 "제8호의2, 제14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를 각각 "무공수훈자, 무공포장수상자,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를 "무공수훈자, 무공 포장수상자,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무공포장수상자: 무공포 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 공무원법 | 제2조 및 「지방 공무원법 | 제2조에 따른 공 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원이 무공포장을 받은 경우에 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보국포장수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포장을

9. ~ 18. (생략)

② ~ ⑥ (생 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 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 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 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u>제14</u>

|           | 받고                | . 전   | <u>역</u> | 한          | 사i | <u> </u> |        |             |          |
|-----------|-------------------|-------|----------|------------|----|----------|--------|-------------|----------|
| <u>나.</u> | 군                 | 인 .   | 외의       | 의 <i>/</i> | 사림 | 0        | 로ノ     | ન <u></u>   | <u>간</u> |
|           | <u>첩처</u>         | 포-    | 등의       | 의 /        | 나유 | -로       | 보      | 국           | 垩        |
|           | <u>장을</u>         | -     | 받.       | <u> </u>   | 사  | 람.       |        | 다           | 만,       |
|           | 국                 | '가    | 공트       | 구원         | 법_ | J        | 7      | <u>भ</u> ]2 | 조        |
|           | 및                 |       |          |            |    |          |        |             |          |
|           | 조에                | l t   | 다른       | <u>.</u>   | 공두 | L<br>원   | (군     | 인           | 은        |
|           | 제외                | <br>한 | 다)       | 과          | 국  | 가ι       | }      | 괴           | 방        |
|           | <u> 자치</u>        | 단     | 체ㅇ       | ll서        | (  | 일성       | }적     | <u></u>     | 로        |
|           | <br>공무            |       |          |            |    |          |        |             |          |
|           | 으로                | - Z   | 성히       | 는          | 직  | 원여       | <br>>] | <br>간       | <br>첩    |
|           | <br>체포            |       |          |            |    |          |        |             |          |
|           | <del>-</del><br>을 |       |          |            |    |          |        |             |          |
|           | <br>사림            |       |          |            |    |          |        |             |          |

- 9. ~ 18.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② (현 행과 같음)

| 3  |
|----|
|    |
|    |
|    |
|    |
|    |
|    |
| 제8 |

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④ ~ ⑥ (생 략)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u>무공수</u> <u>훈자, 보국수훈자,</u> 재일학도의 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 ~ 4. (생 략) ② (생 략)

| 호의2, 제1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④ ~ ⑥ (현행과 같음)<br>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   |
|   |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br>                |
|   |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br>                |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 다.
- 1. <u>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u> · 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 2. · 3. (생략)
- ④ (생 략)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u>무공수</u> <u>혼자, 보국수훈자,</u> 재일학도의 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 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 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 ~ 5. (생략)
  - ②·③ (생 략)

| ③                               |
|---------------------------------|
|                                 |
|                                 |
|                                 |
|                                 |
| <u>.</u>                        |
| 1. 무공수훈자, 무공포장수상자,              |
|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                |
|                                 |
| _                               |
| 2.·3. (현행과 같음)                  |
| ④ (현행과 같음)                      |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
|                                 |
|                                 |
|                                 |
| 1무공수                            |
| <br>훈자, 무공포장수상자, 보국수            |
| 훈자, 보국포장수상자,                    |
|                                 |
|                                 |
|                                 |
|                                 |
| <br>2. ~ 5. (현행과 같음)            |
| 2. ~ 3. (현행과 끝름)   ②·③ (현행과 같음) |